

I. 완화 배경

-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외환수급 개선방안(24.12.20)」을 마련하고 실물경제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외환유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음
 - 동 개선방안에 따라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한도를 확대(500억달러 → 650억달러, 24.12월)하고,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하는 등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 완화(25.2월)도 기 실시

- 올해 상반기 중에는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논의(25.3.9)하고 동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발행 외화채무증권(이하 “김치본드”)에 대한 투자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2011년 7월 이후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김치본드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 되어 있었음
 -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 등록을 한 외국환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 ** 한국은행은 과도한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2010년 7월 이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을 해외실수요로만 제한(외화대출 용도제한)하였으나, 김치본드가 규제 우회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태를 적발함에 따라 투자제한 조치를 시행

Ⅱ. 조치 내용

- 규제 완화의 실효성, 차주의 리스크 관리 능력, 여타 외환건전성 제도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김치본드에 대한 투자를 전면 허용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김치본드 발행 자금의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투자 가능
 - (시행일) 2025년 6월 30일
- 다만 사모발행 김치본드의 경우 외화대출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데다가, 투자 허용시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의 우회 수단(loophole)으로 이용될 수 있어 금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사모발행 김치본드 투자와 관련하여 이전처럼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를* 준수해야 함
 - * (원칙) 해외실수요만 가능
(예외) 중소기업,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대출 등 허용
 - 추후 외화대출과 함께 단계적 완화를 검토할 계획

Ⅲ. 기대 효과

□ 동 조치는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원화 약세 압력 완화 등 외환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김치본드 시장 활성화 등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기업이 김치본드 발행으로 조달한 외화를 국내사용을 위해 외화자금시장에 공급하거나 외환시장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원화 약세 압력 완화 등에 기여

* 김치본드 발행자금의 원화환전 경로는 <참고> 참조 (5p)

○ 김치본드 시장 활성화로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및 투자자**의 자금운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의 자율성 제고, 수익원 다각화 등도 기대

* 기업은 원화·외화 채권발행 중 조달비용을 고려하여 최적의 선택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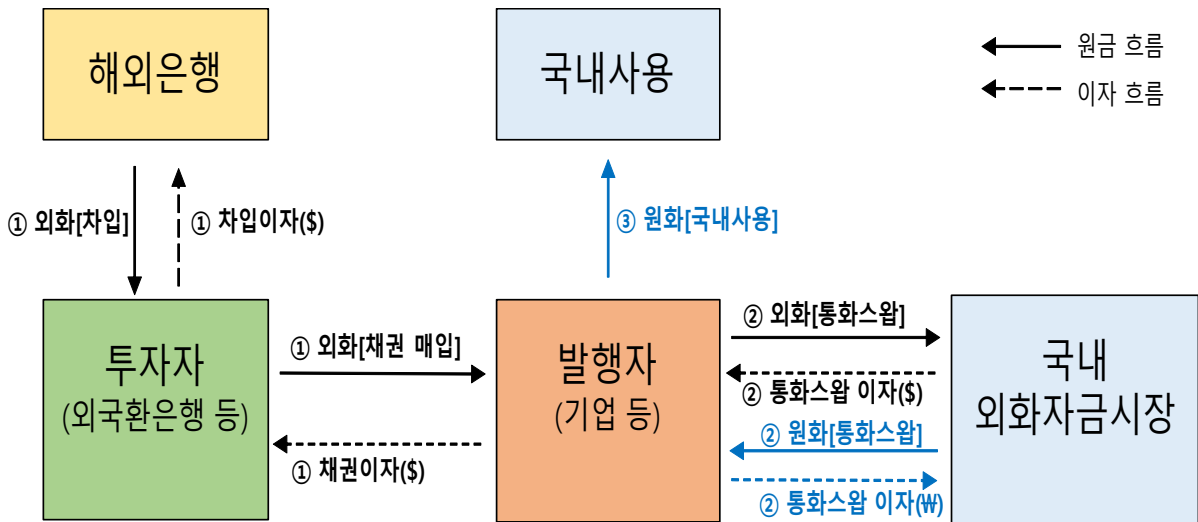
** 당행 조사결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김치본드에 대한 투자 잔액#은 규제 도입 이후 큰 폭 하락하였음

11.6월말 165.6억달러 → 25.2월말 1.6억달러 (공모발행 채권 기준)

<참고>

김치본드 발행자금의 원화환전 경로(예시)

※ 본 그림은 김치본드 발행자금의 원화환전 경로를 이해하기 쉽도록 도식화한 것으로 실제 경로는 세부 내용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매커니즘]

- ① (기업) 김치본드 발행 <채권이자(\$) 지급>
(투자자) 해외에서 외화차입 후 채권투자 실행
<차입이자(\$) 지급, 채권이자(\$) 수취>
- ② (기업) 국내에 외화자금을 공급하는 대신 원화자금을 수취(통화스왑)
<통화스왑 이자(₩) 지급, 통화스왑 이자(\$) 수취>
- ③ (기업) 국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에 사용

[최종 금리]

→ (기업) “채권이자(\$) + 통화스왑 이자(₩) - 통화스왑 이자(\$)” 지급*

* 기업은 동 금리와 원화채권 발행 금리를 비교 후 최적의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

→ (투자자) “채권이자(\$) - 차입이자(\$)” 수취